서식 **실적자료(신규 사례)**

제 목	대구 포획채취 금지기간 제도 개선			기 관 명	기장군
부 서 명	해양수산과	담당자	○○○	전화번호	051-709-4503
				휴대전화	
대 회 출전여부	해당없음			유 형	①
핵 심 규제애로	-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대구 금어기의 지역별 차이 - 대구 어종의 제철인 매년 1월은 산란기 어종 보호를 목적으로 기장군 어업인은 조업이 불가하나 인접지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업인은 조업이 가능한 모순 발생				

- 기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대구 금어기의 지역별 차이
- 추진과정 대구 포획·채취 금지기간 조정 지속 건의, 해양수산부 협의 및 간담회 개최
- 개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구 금어기 전국 일원화 (전국 1.16.~2.15)
- 효과 지역 간 조업 분쟁 해소 및 어업질서 확립 계기

□ 규제애로 현황 및 문제점(기존)

○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대구 금어기의 지역별 차이(부산·경남:1월, 전국:3월)

○ 대구 어종의 제철인 매년 1월은 산란기 어종 보호를 목적으로 기장군 어업인은 조업이 불가하나 인접지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업인은 조업이 가능한 모순 발생

○ 특히, 기장군과 울주군의 법정 해상경계가 없는 상황으로 울주군 어업인이 기장군 북측 해상에서 조업함에 따라 지역 간 갈등 발생

□ 규제개선 과정(추진과정)

○ 2016~2019 대구 포획·채취 금지기간 조정 지속 건의

○ 2017 대구 포획·채취 금지기간 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 협의(2회)

○ 2018 대구 포획·채취 금지기간 일원화 간담회 개최(2회)

- 해양수산부(수산자원정책과장 외 3), 기장군(해양수산과장 등), 어업인 20여명

○ 2020 관련법규 개정으로 대구 금어기 전국 일원화(전국 1.16.~2.15)

-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'20.9.22.개정, '21.1.1.시행

□ 규제애로 개선내용(개선)

○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구 포획채취 금지기간 일원화

-개정전 :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

다만,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는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.

-개정후 : 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

□ 주요성과 및 기대효과(효과)

○ 지역 간 조업 분쟁 해소 및 어업질서 확립 계기

○ 지역 어업인 소득 증대 및 경제 활성화 도모

참고 **관련 법령 개정**

□ 개정사항

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[별표 1] <개정 2020. 11. 10.>

수산자원의 포획·채취 금지 기간·구역 및 수심(제6조제1항 관련)

수산자원		학명	포획·채취 금지 기간·구역 및 수심
1. 모든 수산동식물			주1) 및 주2)의 해역에서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
2. 어류	가. 개서대	*Cynoglossus robustus*	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
	나. 대구	*Gadus macrocephalus*	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
	다. 문치가자미	*Pleuronectes yokohamae*	12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
	라. 연어	*Oncorhynchus keta*	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
	마. 전어	*Konosirus punctatus*	5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. 다만, 강원도 및 경상북도는 제외한다.
	바. 쥐노래미	*Hexagrammos otakii*	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. 다만, 주3)의 해역에서는 11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로 한다.
	사. 참홍어	*Raja pulchra*	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
	아. 참조기	*Larimichthys polyactis*	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(근해자망어업 중 유자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4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). 다만, 해당 기간 중 참조기를 어획량의 1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·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	자. 갈치	*Trichiurus lepturus*	북위 33도00분00초 이북(以北) 해역에 한정하여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(근해채낚기어업 및 연안복합어업은 제외한다). 다만, 해당 구역에서 해당 기간 중 갈치를 어획량의 1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·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	차. 고등어	*Scomber japonicus*	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. 다만, 해당 기간 중 고등어를 어획량의 1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·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□ 신구조문 대비표

-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('20.9.22.개정, '21.1.1.시행)

개정전

[별표 1]

수산자원의 포획·채취 금지 기간·구역 및 수심(제6조제1항 관련)

수산자원		학명	포획·채취 금지 기간·구역 및 수심
1. 모든 수산동식물			
2. 어류	나. 대구	Gadus macrocephalus	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. **다만,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는 1월 1일부터 1월 31일**까지로 한다.

개정후

[별표 1]

수산자원의 포획·채취 금지 기간·구역 및 수심(제6조제1항 관련)

수산자원		학명	포획·채취 금지 기간·구역 및 수심
1. 모든 수산동식물			
2. 어류	나. 대구	Gadus macrocephalus	**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**